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등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 제879호, 제880호 , 제881호
- 다. 제출일자 : 2023. 5. 30.
- 라. 회부일자 : 2023. 6. 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2	22,035	22,035	27,661	24,474	43	3,144	88.5

- 세입예산현액은 220억 3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76억 6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44억 74백만원을 수납하고, 43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1억 4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88.5%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98,516	16,696	-	1,177 (-1,177)	-	884 (-884)	115,212	88,360	19,710	5,084	14,626	2,477	4,665 (4.0%)

- 예산액 985억 1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6억 9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2억 12백만원으로, 이 중 76.7%인 883억 60백만원은 지출하고 17.1%인 197억 10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24억 77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46억 6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사용 : 해당없음

○ 변경 사용

- 예산 변경 사용은 8건에 11억 77백만원으로
- 풍수해 예방대책 13백만원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14백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815백만원
-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2건) 190백만원
-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 92백만원
-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32백만원
-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20백만원임.

○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 이체

- 예산이체는 5건에 884백만원으로
-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564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사무관리비) 5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기타보상금) 25백만원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240백만원
-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49백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50억 8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152억 12백만원 대비 4.4%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46억 2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6%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24억 7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152억 12백만원 대비 2.1%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6억 6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152억 12백만원 대비 4.0%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2	115,212	4,665	4.0	

- 발생원인별 내역

-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 39억 8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57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2	15,000	15,000	16,300	16,300	-	-	100.0

- 예산현액 150억원 대비 108.6%인 16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63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47,821	9,550	-	107 (-107)	-	-	57,371	46,219	6,797	1,850	4,947	-	4,355 (7.6%)

- 예산액 478억 2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5억 50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73억 71백만원으로, 이 중 80.6%인 462억 19백만원은 지출하고 11.8%인 67억 9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43억 5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2건에 1억 7백만원으로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34백만원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73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18억 50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73억 71백만원 대비 3.2%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49억 4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 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3억 5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573억 71백만원 대비 7.6%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2	57,371	4,355	7.6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4,355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수납율(% (B/A)
2022	33,731	33,731	33,115	33,115	-	-	100.0

- 세입 예산현액은 337억 31백만원으로 331억 1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31억 15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33,731	-	-	-	-	33,704 (33,704)	33,731	30,060	727	-	727	1,966	978 (2.9%)

- 예산현액은 337억 31백만원으로, 이 중 89.1%인 300억 60백만원은 지출하고, 2.2%인 7억 2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인 19억 66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9억 7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 예산이체는 49건 337억 4백만원으로
 -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95백만원
 -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시설비, 감리비) 1,800백만원 등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7억 27백만원(사고이월)으로 이는 예산현액 337억 31백만원 대비 2.2%에 해당함.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66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37억 31백만원 대비 5.8%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9억 7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37억 31백만원 대비 2.9%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2	33,731	978	2.9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2억 30백만원
-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 4억 11백만원
- 예비비 : 3억 37백만원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 금	예탁 금	예수금 상환	기타	다음 연도 이월 액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2020					해	당	없	음							

- 수입은 전입금 496억 46백만원과 이자수입 6억 47백만원을 합한 502억 93백만원이며, 예치금 502억 93백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음.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2	22,035	22,035	27,661	24,474	43	3,144	-	3,144	88.5
2021	7,774	7,774	13,632	10,402	144	3,086	-	3,086	76.3
2020	13,349	13,349	16,375	13,027	43	3,305	-	3,305	79.6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220억 3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76억 6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244억 74백만원을 수납하고, 4천3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1억 4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8.5%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21~28)

- 금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25.5%로 총 56억 26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2021회계연도 175.4% 총 58억 58백만원과 비교하여 비율은 낮아졌으나 금액은 비슷한 수준인바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았던 항목은 다음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차액 (b)-(a)	사 유
세외수입					
그외수입 (수반침청도과)	730	1,750	1,750	1,020	· 소송 환수금 증가
자체보조금반환 수입 (치수안전과)	166	600	600	434	· 청계천 관련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반납액이 예상치보다 증가
지난연도수입 (치수안전과)	99	3,114	34	3,015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 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세입예산액 7억 3천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17억 5천만원으로 10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2020회계연도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6억 54백만원과 지연손해금 7천 6백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비용 중 '20년~'21년 2개 년도의 소송환수금이 증가(14억 83백만원)하였고, 그 밖에 분담금 집행잔액, 원인자부담금 환급액 등의 기타 잡수익(2억 67백만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 1억 66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6억원으로 4억 34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서울시설공단의 청계천 대행사업비 반납액이 당초 추계액보다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 반납액에 대한 주요 내역은,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3억 28백만원,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운영 대행사업비 1억 23백만원, 청계천 준설공사 9천4백만원 등임.
- 이 중 청계천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경우 매년 위탁사업비가 증가('20년 91억, '21년 94억, '22년 101억)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공단으로의 요청에 의해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사료됨.
- 다음으로, 치수안전과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9,9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31억 14백만원으로 30억 15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징수결정액이 이월된 체납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상하는 것에 반해 예산액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액(2~3%)을 기준으로 추계함에 따라 매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 따라서,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체납액 징수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의욕적으로 예산액을 편성함으로써 징수결정액과의 간격을 좁혀가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21~28)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31억 44백만원이며,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31억 44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

음과 같음.

차년도 이월액	31억 44백만원
- 하천사용료	3천 2백만원
- 변상금	6천 4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30억 45백만원
- 기타(시도비 보조금반환, 이자수입)	3백만원

- 이 중 ‘지난년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30억 45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소송비용 등의 고질적 장기 체납에 따른 것으로,
 - 지난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1억 22백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1.1%인 3,453만원에 불과하고,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바, 초기체납 방지와 고질적 체납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다음 [표 2]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28억 25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예금, 직장 등을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임.

[표 2]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3,144,287
	무재산	149,858
	행방불명	11,325
	납세태만	2,824,895
	폐업 또는 부도	32,795
	국외이주	678
	자금압박	3,527
	기타	121,076
	납기미도래	133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98,516	16,696	-	1,177 (-1,177)	-	884 (-884)	115,212	88,360	19,710	5,084	14,626	2,477	4,665 (4.0%)
2021	108,301	21,752	6,776	768 (-768)	20 (-20)	316 (-316)	136,829	113,931	16,696	2,553	14,143	46	6,156 (4.5%)
2020	109,577	17,158	2,840	253 (-253)	-	311	129,576	101,558	21,752	9,708	12,044	109	6,157 (4.8%)

가) 개 요

- 예산액 985억 1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6억 96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152억 12백만원으로, 이 중 76.7%인 883억 6천만원은 지출하고 17.1%인 197억 1천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인 24억 77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46억 6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7~61)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0%인 46억 65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등 6건([표 3] 참고)에 해당함.

[표 3]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수변감성도시과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3,814	0	1,645	43.1%
2	치수안전과	정밀안전진단(빗물펌프장, 수문 등 용역)	4,345	3,478	481	11.1%
3	치수안전과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	0	7	100.0%
4	치수안전과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3	1	2	66.7%
5	치수안전과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태양광) 설치	400	0	400	100.0%
6	치수안전과	홍제천(마포구) 징검다리 설치	100	66	34	34.0%

- 먼저,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CSOs 저류조를 설치하기 위한 국비 50% 매칭 국고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14백만원 중 43.1%인 16억 4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참고로 동 사업은 2021회계연도 사업비 38억 14백만원(국비 21억 69백만원)을 2022회계연도로 사고이월 하면서 본예산 3억 48백만원(국비 1억 74백만원)을 포함하여 당초에는 예산현액이 41억 62백만원 이었으나,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 2022년 본예산 3억 48백만원 전액을 감액한 바 있음.
- 당해연도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20.11월 공사 착공 후 인·허가 절차 이행, 설계도서 검토, 설계오류에 대한 보완설계, 우수지복개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추가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2021.4.2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였고, 추가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¹⁾되어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되었으며,

- 인근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22.5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과 위치적으로 근접함에 따른 공사의 안전성 확보 문제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고,
 - 또한, 주민 민원발생(소음 및 건물 균열 등) 및 위험시설(옹벽,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²⁾를 위해 준공 시기를 당초 '22.5월에서 '26.5월로 연장하였음.
 - 따라서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후 '24.10월 이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38억 14백만원 중 2021회계연도에서 2022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되었던 국고보조금 21억 69백만원은 2개년도 이상 예산이월이 불가하여 '22.12월 반납하고, 남은 시비 16억 45백만원은 불용한 것임.
 - 이처럼 사업 공정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정밀안전진단(빗물펌프장, 수문 등 용역)’ 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3억 45백만원 중 11.1%인 4억 8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1) 입찰 결과(설계 예산 2억 8천만원) : '21.11.10(무응찰), '21.12.02(무응찰)

2)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사업시기 조정 검토보고 (물순환정책과-535, 2022.1.10.)

-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에 근거하여 1종 시설물인 빗물펌프장 등을 주기적으로 정밀점검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빗물펌프장이 위치한 13개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자치구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음.
- 불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4억 81백만원중 낙찰차액은 4억 38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데,
- 정밀안전진단은 사업의 특성상 용역이 12월에 준공되고 추가 과업 등의 발생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투입의 가능성으로 인해 서울시가 자치구로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하고 있는바, 특이사항은 없음.

[표 4] 정밀안전진단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예산현황			재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 (’22 →’23)	집행잔액
	최종예산(a)	전년도 이월액(b)	현액 (c=a+b)				
용산구	465,000		465,000	465,000	403,498		61,502
성동구	559,341	87,876	647,217	646,189	558,810	44,000	44,407
광진구	338,500		338,500	336,233	210,554	92,830	35,116
동대문구	284,000		284,000	287,837	0	249,257	34,743
마포구	394,000		394,000	381,986	331,212		62,788
양천구	130,000		130,000	129,910	112,300		17,700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별 정밀안전진단 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6년에 1회
B,C	5년에 1회
D,E	4년에 1회

자치구	예산현황			재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 (’22 →’23)	집행잔액
	최종예산(a)	전년도 이월액(b)	현액 (c=a+b)				
강서구	212,000		212,000	207,416	201,200		10,800
구로구	423,000	32,558	455,558	455,558	436,139		19,419
금천구	142,000		142,000	142,000	137,317		4,683
영등포구	178,000		178,000	173,250	149,780		28,220
동작구	736,000		736,000	719,100	618,924		117,076
서초구	150,000		150,000	148,600	148,600		1,400
강동구	213,027		213,027	208,950	170,009		43,018
계	4,224,868	120,434	4,345,302	4,302,029	3,478,343	386,087	480,872

- ‘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생태하천 복원 및 하천정비 등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 공사 등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예산현액 7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본 사업예산은 전액 시설비로 하천구역 변경 등에 따른 열람 공고를 위한 신문게재비와 하천 정비를 위한 측량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데 당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태양광) 설치’ 사업은 청계천 안전통로 가로수의 생육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22. 8월 제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같은 해 9월 가로수 1개소를 대상으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으나, 보행 안전성 위험(도로폭 40cm 감소)과 야간조명으로써의 현실성(개당 가격 30만원→180만원)이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불용한 것임.

- 이는 추경 편성 당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사업평가와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그림 1]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태양광) 설치에 따른 도로폭 감소 현황

- ‘홍제천(마포구) 징검다리 설치’ 사업은 홍제천 내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홍제천 좌우안의 접근성을 높여 하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34.0%인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본 사업은 '22. 8월 제2회 추경 시 서울시가 1억원을 편성하여 마포구로 재배정한 후 마포구가 이를 집행하고 1억원 중 34%에 해당하는 3,4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 이처럼 불용률이 과다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자치구의 요청금액을 서울시가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자치구 요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추계액에 대해 그 산정기준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 예산전용(결산서 p.69)

- 해당없음

라) 예산이체⁴⁾(결산서 p.73)

- 예산이체는 5건에 8억 84백만원으로, 이는 '22.8.1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가 개정⁵⁾되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하면서 기존에 수변감성도시과(기존 '물순환정책과')에서 담당하였던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5] 예산 이체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계	5건		884	884	884	
수변감성도시과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자치단체간부담금	564	564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2.8.19.시행)
치수안전과	인천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	자치단체간부담금			564	
수변감성도시과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5	5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2.8.19.시행)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			5	
수변감성도시과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	26	26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2.8.19.시행)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원 관리	기타보상금			26	
수변감성도시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240	240		행정기구 설치조례

4)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5) [시행 2022. 8. 19.] [서울특별시규칙 제4501호, 2022. 8. 18., 일부개정]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치수안전과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240	시행규칙(2022.8.19.시행)
수변감성도시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자치단체간부담금	49	49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2.8.19.시행)
치수안전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자치단체간부담금			49	

마) 예산변경 6)(결산서 p.81)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8건에 11억 77백만원으로 이 중 ‘국가 하천 유지보수’,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등 변경사용하였음.

[표 6]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8건			12,077	1,124	1,124		
치수 안전과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60	13	0	2022-12-13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횟수 증가로 재대본 운영비 부족 등
	풍수해 예방대책	201-01 사무관리비	225	0	13		
치수 안전과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50	14	0	2022-12-26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년대비 시설 가동 횟수 증가 및 펌프 가동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부족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50	0	14		
치수 안전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5,907	815	0	2022-8-4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 사’ 감리비 예산 부족
	국가하천 유지보수	401-02 감리비	0	0	815		
치수	홍제천(종로구) 상류	401-02	70	70	0	2022-11-28	물가변동 및 공사현장

6)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안전과	보행축 조성사업	감리비					실정보고건에 따른 증액 공사비 부족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965	0	70		
치수 안전과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401-02 감리비	120	120	0	2022-11-28	물가변동 및 공사현장 실정보고건에 따른 증액 공사비 부족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1,230	0	120		
치수 안전과	홍제천(마포구) 망월나들목 설치 사업	401-01 시설비	2,330	92	0	2022-9-20	2차분 감리용역 발주 예산 부족
	홍제천(마포구) 망월나들목 설치 사업	401-02 감리비	70	0	92		
치수 안전과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401-01 시설비	1,500	32	0	2022-12-20	당초 계획대비 감리투입기간 증가로 감리비 예산 부족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401-02 감리비	450	0	32		
치수 안전과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408	20	0	2022-8-17	레미콘 수급 불안정 등의 사유로 공사 및 감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예산 부족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	401-02 감리비	249	0	20		

- 먼저, ‘**풍수해 예방대책**’의 경우 당해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상 근무 횟수가 증가(‘21년 23회→’22년 36회)함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계획에 없던 각종 보고회 및 토론회 등이 개최되면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여 ‘**수방시스템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부득이했음은 인정되나 가급적 변경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의 경우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같은 단위사업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 이는 당해 8.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의 가동 횟수가 증가('21년 4회→'22년 11회)함에 따라 전년대비 전기 사용료가 증가하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400만원을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지출잔액에서 융통하여 사용한 것임.

[표 7]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전년대비 전기사용료 비교

구 분	2021년(1~11월)	2022년(1~11월)
전기 사용료	186,412천원	214,729천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시행중인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59억 7백만원 중 8억 15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한 것으로,
 - 동 사업은 환경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예산을 물순환안전국에서 편성한 후 한강사업본부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22. 6월 사업 시행부서인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예산변경 요청⁷⁾에 따른 것임.

[표 8]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현황

구 분	국 가 하 천 유 지 보 수	비 고
계	10,224백만원	국비 100%
시설비(401-01)	5,907백만원	
	- 잠실수중보 보수·보강공사	5,551백만원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83백만원
	- 녹화지 유지관리 사업	173백만원
자치단체보조(403-01)	4,317백만원	
	- 성동구 등 10개 자치구	4,317백만원

7) '예산변경 및 재배정 요청(국가하천유지보수)' (하천관리과-24963, 2022. 06. 24.)

- 동 변경에 대해 서울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비가 미편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를 융통하였다는 입장이나, ‘잠실수중보 보수공사’와 같은 건설사업의 경우 감리비는 예산편성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이를 간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 당초 예산서 내역에 없던 감리비 항목을 새로이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일부 침해한다 할 것임.
-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은 홍제천 이용수요 증진 및 시민들의 보행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 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감리비 1억 9천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증가액 7천3백만원과 비계설치 등에 따른 물량증가 1억 17백만원에 대한 시설비 증액으로, 서울시는 동 공사감독을 서울시설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미사용한 감리비 1억 9천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예산변경을 통해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은 이해되나 예산편성 당시 서울시설공단과의 사전협약이 있었다면 감리비 1억 9천만원은 편성하지 않았어도 될 예산이

라는 점에서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겠음.

- 한편, 동 예산변경을 1건이 아닌 2건으로 처리한 사유는 당해 연도 편성된 감리비 예산액 7천만원과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감리비 1억 2천만원을 예산변경⁸⁾함에 따른 것임.

[표 9]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설비	2,583	1,230	965	388
감리비	190	120	70	-

-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은 홍제천에 망원나들목을 설치하여 홍제천과 한강 및 주변 공원에 대한 망원동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시설비로 편성된 23억 3천만원 중 9,2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동 사업은 당초 감리비를 7천만원 편성하였으나, 1차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22. 8. 11 준공)에 모두 소진⁹⁾한바, 2차 공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비가 부족하여 9,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융통하여 사용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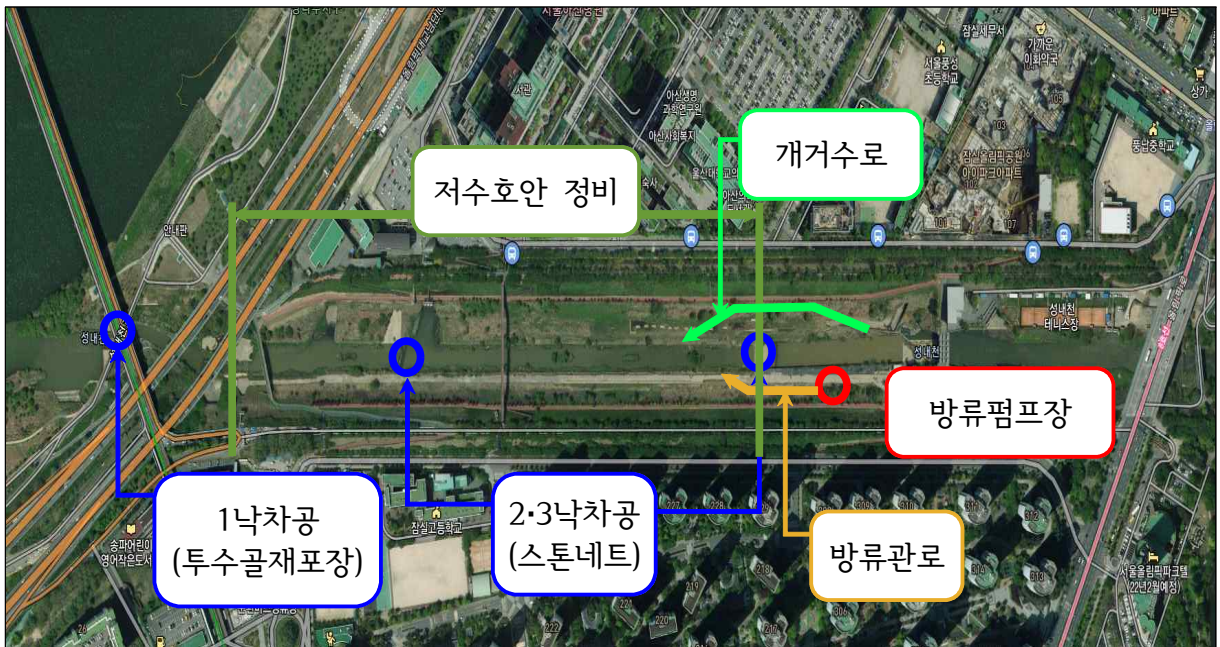
8)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22년)

〈예산의 이월 항목 중〉

-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 내에서 통계목의 변경 사용 가능

9)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차」(’22.6.13.~8.11.) 준공

- 이는 예산편성 당시 고려되었어야 할 공정별 감리비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예산 편성시 공정별 세심함 예산추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은 성내천 고지배수로 침사지 정체수 배제 등을 통하여 성내천과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성내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15억원 중 3,200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그림 3]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주요공종('22~'23년)

- 동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수방기간('22. 5. 15일~10. 15일)내 공사 중지를 고려하여 그에 따른 감리비를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내 포함된 방류펌프장을 조기 신설하고자 수방기간 공사 중

지 기간보다 2개월 앞당겨(8월 공사 착공) 공사를 추진¹⁰⁾함에 따른 것으로, 부족 감리비 2개월분 3,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융통하여 사용한 것임.

- ‘전농천(성동구)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사업’은 강우 시 차집관로 하수가 월류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전농천 미복개 구간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회 변경사용은 동일 세부사업내 시설비 44억 8백만원 중 2천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동 예산변경에 대해 서울시는 원자재비 상승 및 파업 등에 따른 레미콘 수급 불안정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비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부족분을 시설비에서 융통하였다는 입장으로, 부득이함이 인정된다 할 것임.

바) 예비비(결산서 p.85)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87~192)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46억 26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152억 12백만원 대비 12.6%에 해당됨.
- 사유별 현황([표 10]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사추진 중

10) 「예산(통계목) 변경 요청(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송파구 치수과-28994, 2022. 12. 13.)

장애발생 6건에 44억 5천만원, 준공기한 미도래 10건 28억 57백만원, 사전절차 지연 4건 29억 13백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5건 44억 6백만원 등 총 25건(146억 26백만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함.

[표 10]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사 유 별	2022	
	건수	이월액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6	4,450
준공기한 미도래	10	2,857
사전절차 지연	4	2,913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등	5	4,406
계	25	14,626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11]과 같음.

[표 11]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8건			18,357	10,041	413	54.7%	
1	수변 감성 도시과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	2,825	1,459	39	52%	жат은 강우,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준공 연장시행
2	수변 감성 도시과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	665	295	119	44%	우기철(5~10월)에 유수지내 공사가 불가능하여 12월에 착공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공사비 이월 ('23.5.12. 준공)
3	수변 감성 도시과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용역	721	260	1	36%	용역 최종계약 ('22.7~'23.6.)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4	수변 감성 도시과	하천변 물관리시설 안전·디자인 개선	300	143	15	48%	용역준공기한('22.5.~'23.8.)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5	수변 감성 도시과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	400	280	0	70%	2회 유찰에 의한 계약체결 지연 및 1차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22.8.~'23.5.)에 따른 사고이월
6	수변 감성 도시과	대규모사업장 유출지하수 활용 기본계획 수립	400	184	32	46%	용역준공기한 미도래('22.5.~'23.5.)에 따른 사고이월
7	수변 감성 도시과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318	144	11	45%	용역준공기한 미도래('22.5.~'23.8.)에 따른 사고이월
8	치수 안전과	방학천(도봉구) 위험 옹벽 보강공사	2,300	761	0	33%	좌안 옹벽 공사를 위한 제내지 지장물 이설 공사 등이 일부 지연되어 준공기한('23.12.)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9	치수 안전과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인 빗물펌프장 운영방안 수립용역	200	88	24	44%	용역준공기한 미도래('22.6.~'23.5.)에 따른 사고이월
10	치수 안전과	목동2 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	500	450	0	90%	22년 8월 추경예산 편성 및 11월 설계 완료하여 공사시행('22.12.~'23.3.)함에 따라 공사비 사고이월
11	치수 안전과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사업	1,500	1,283	107	86%	11월 발주 및 계약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 및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예산 사고이월
12	치수 안전과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2,385	902	60	38%	장기계속공사(2차) 준공기한 미도래('22.12.~'23.6.)로 사고이월
13	치수 안전과	도림천(관악구) 단면확장	1,000	714	0	71%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자문 및 서울경찰청 규제심의('22.1.~3.), 설계안전 검토('22.4.) 절차 이행으로 수방기간 이후인 '22.10월 실 착공하였으며 '23년부터 교량 재가설이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관련 공사비 사고이월
14	치수 안전과	중랑천(성동구) 횡단 징검다리 설치	653	653	0	100%	유관기관 협의(하천점용허가) 지연 및 준공기한('23.12.) 미도래로 사고이월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5	치수 안전과	정릉천(동대문구) 유지용수 추가공급	1,983	996	0	50%	22.7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행으로 '22.12월 착공하게 되었으며 공사준공기한 연기로 인한 사고이월
16	치수 안전과	정릉천(성북구) 상류 하천환경 정비사업	1,007	550	5	55%	지역상권주민 민원 및 협의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공사준공기한('22.12.~'23.6.) 연기로 인한 사고이월
17	치수 안전과	중랑천(중랑구) 둔치 보행로 정비	700	467	0	67%	동절기 공사품질 확보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고 이월
18	치수 안전과	불광천(마포구) 성중길 산책로 정비	500	412	0	82%	공사발주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조치(자재구매 등) 및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은 물순환 회복 및 물환경 보전 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도시 수자원의 통합 활용시스템을 지역 단위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8억 25백만원 중 52%인 14억 5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기존에 마을 단위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계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사업 추진전략에 따라 다양한 도시 수자원(유출지하수, 중수, 재처리수 등)을 통합·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으로 확대·추진하는 것으로,



[그림 4] 스마트 물순환 도시 종합개념도

- 중랑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난 '22.4월 설계를 완료하고 '22.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 강우에 따른 공기지연('22.6.21. ~ '22.8.31 : 강우일 72일), 동절기 굴착통제('22.12.1. ~ '23.2.28. : 3개월), 쿨링포그 및 클린로드 배관 매설, 망우로 차도구간 야간공사 시행에 따른 시공효율의 저하, 도면과 상이한 지하매설물¹¹⁾로 인한 설계 재검토 등 공사지연 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22.12월이었던 준공기한을 '23.6월로 연장하면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것임.
- 강우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지연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11) < 지하매설물 저축현황>

내용	저축 지장물	비고
망우로 횡단 배관 (쿨링포그) 매설	-통신(D100mm) 5공 [㈜KT, LG U+, SK네트웍스, 세종텔레콤 -배선지중관로(φ300mm) [한국전력공사] -구조물(B70cm×H100cm이상)	구조물(B70cm×H100cm이상) 도면에 부재
식물재배화분 및 침투트렌치	-통신(D100mm) 3공 [㈜KT, LG U+]	도면과 위치 상이함

※ 대상사업지내 지하시설물 종류

: 제수밸브(상수도), 하수관거(물재생계획과), 배전 및 전력지중관로(한국전력공사), 통신관로(각 통신사)등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고, 지하매설물의 경우 사전 기초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미흡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 전 사업추진에 따른 기초조사 및 기본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같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운영’은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를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및 슬러지 처리비로, 예산현액 6억 65백만원 중 44%인 2억 9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저류조 운영 과정에서 유입수문 누수로 저류조 내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 체류에 의한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여 유수지 내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시한 유입수문 이중화 공사가,
 - '22.4월 설계용역 준공 후 수방기간(매년 5.15.~10.15.)이 도래하여 유수지 내 공사가 불가하여 '22.12월이 되어서야 착공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였고, '23.5월 준공완료하였음.
 - 수방기간은 매년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은 하천별 용수공급 최

적화(수량, 수질, 운영) 및 기존 관망을 활용하여 市전역에 도시 관리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원 중 70%인 2억 8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2.4월 용역 발주를 의뢰하였으나, 입찰이 2회 유찰¹²⁾되어 '22.8.30일 수의계약됨에 따라 준공기한 미도래('22.8.~'23.5.)로 인한 용역비를 사고이월 한 것임.

- 이처럼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 용역발주 자체가 순연되면서 예산의 적기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찰의 원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목동2 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는 목동 2빗물펌프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된 토출관로 변형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90%인 4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21. 12월 완료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토출관로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¹³⁾에 따라 양천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여 '22. 5월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해 8월 제

12) ○ 1차 공고 : 4.11.공고 / 5.3.개찰 --> 유찰
○ 2차 공고(재공고) : 6.3.공고 / 6.15.개찰 --> 유찰
○ 3차 공고 : 7.18.공고 / 8.2.개찰 --> 유찰/단독응찰
=>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5조제3항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개정전 '22년 7월 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2022-46호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고시

○ 용역체결일자 : 22.8.30.

13) 공사시행 「목동2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긴급 (양천구 치수과-16662, 2022. 11. 24.)

2회 추경을 통해 5억원을 재배정하여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 해당 자치구는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를 당해 11월 완료한 후 같은 해 12월에서야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지난해 편성한 예산 중 원인행위 일부금액인 4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추경 편성시 가급적 연내 소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상폭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침수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원 중 86%인 12억 8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22.8.8일 폭우피해로 인해 침수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수방시스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시는 '21.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원¹⁴⁾을 활용하는 사업임.

-
- | |
|--|
| 1. 공 사 명 : 목동2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 |
| 2.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 3. 공종구성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4.7%), 상하수도설비공사업(75.3%) |
|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
| 5. 도 급 비 : 금 817,740,000원 |

14) 「2021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결정」(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5193, 2021. 12. 20.)



[그림 5] 침수예측 정부시스템 개념도(안)

- 이에 서울시는 '22. 9월 사업방침서¹⁵⁾ 수립 후 계약심사,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였고, '22. 11월 입찰공고에 따른 발주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중랑천(성동구) 횡단 징검다리 설치’ 사업은 둔치 내 좌우 횡단을 위한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하천이용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53백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중랑천의 경우 국가하천인 관계로 한강유역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공사착공이 가능하나, 환경부 주관의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해당 용역이 준공되는 '23년이 되어야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가능하여 전액 사고이월한 것임.

15)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사업 긴급 추진계획」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2126, 2022. 9. 21.)

- 한편,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전액 과년도에서 이월된 명시이월액으로 당해연도에도 또다시 이월이 발생함으로써 재원이 2년 동안 사용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낳았는 바,
 - 상위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히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불광천(마포구) 성중길 산책로 정비’ 사업은 불광천 옆 성중길 보행공간을 안전하고 걷기 편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중 82%인 4억 12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본 사업은 '22.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마포구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같은 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한 후 9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¹⁶⁾를 득하는데 상당 기일이 소요('22. 11. 15.)되었고,
 - 공사 착공이 동절기로 미뤄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인행위 지출액을 제외한 원인행위미필액 4억 12백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집행 가용일수가 많지 않은 제약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동 사업과 같이 사전절차를 득해야 하는

16)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부적정)

-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약부서 협의하여 조달우수 제품 중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제품에 대해 조달 구매하여 사업 추진

사업의 경우 가급적 추정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편성되는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2	15,000	15,000	16,300	16,300	-	-	-	-	100.0
2021	13,000	13,000	10,000	10,000	-	-	-	-	100.0
2020	11,000	11,000	11,000	11,000	-	-	-	-	100.0

가) 개요

- 예산현액 150억원 대비 108.6%인 16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63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47,821	9,550	-	107 (-107)	-	-	57,371	46,219	6,797	1,850	4,947	-	4,355 (7.6%)
2021	56,876	5,389	-	135 (-135)	-	-	62,265	51,925	9,550	2,500	7,050	-	790 (1.3%)
2020	57,247	12,417	-	350 (-350)	-	-	69,664	59,332	5,389	-	5,389	-	4,943 (7.1%)

가) 개요

- 예산액 478억 21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5억 50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73억 71백만원으로, 이 중 80.6%인 462억 19백만원은

지출하고 11.8%인 67억 9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43억 5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7~59)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573억 71백만원 대비 7.6%인 43억 55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2건임.

[표 12]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과)	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치수안전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6,635	14,433	2,202	13.2%
2	치수안전과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8,611	5,981	1,956	22.7%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집중호우 시 인근 고지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로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유역분리터널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66억 35백만원 중 13.2%인 22억 2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불용은 전액 지출잔액으로, 발생사유는 수방기간 임시통수 일정이 2개월 앞당겨 짐(’22.7.31. → ’22.5.31.)에 따라 유입부 수직구 가시설의 변경과 겐트리크레인 기초 철거 방법 등의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른 공정계획의 변경과 사업종료로 인해 발생한 것임.

- 이는 수방기간내 발생할 수 있는 수해를 예방하고자 수방기간 임시통수기간을 앞당긴 것으로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임시통수는 이미 정해진 절차였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수방기간 역시 매해 5.1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예산편성 시점에서 임시통수 일정을 보다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 아쉬움이 있음.
-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¹⁷⁾에 따라 30년 강우빈도의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6억 11백만원 중 22.7%인 19억 5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당해연도 2월 유입관로내에서 굴진장비 베어링의 고장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부품수리 및 장비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고 6월에야 굴진장비를 반출시킨 후 7월부터 설계사와 시공사 간에 보완설계협의를 진행되어 '23. 5월 잔여구간 시공방안을 검토하고 변경설계를 추진하여 같은 해 6월 공사 재개를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 중 보완설계에 따른 재설계비 3억원을 제외한 시설비 전액(64억 14백만원)을 '22. 8월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하였으나, '21년도에서 이월된 사고이월액 34억 71백만원은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추경 할 수 없는바¹⁸⁾, 이 중 집행잔액 19억 56백만

17) 「망원배수구역 배수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물재생계획과-2879, 2019. 2. 28.)

원을 불용한 것임.



[그림 6]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공사 현장 사진



[그림 7] 사천 빗물펌프장 굴진장비 변경 공법(세미셴드) 개요도

- 현재 설계 및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를 재추진하고 있으므로
기 집행된 예산의 매몰비용과 추가 설계비, 공사 지연에 따른

18)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사고이월액은 예산액이 아닌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므로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없음.

지연배상금¹⁹⁾ 등에 대한 부과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라)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²⁰⁾(결산서 p.84)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1억 7백만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은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3천4백만원,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사업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7천3백만원 융통하여 사용함.

[표 13]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 유
				감액	증액		
2건			17,783	107	107		
치수안전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401-01 시설비	15,618	34	0	2022-11-11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 준공기한 연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기한 순연(2개월 연장)으로 감리비 부족
		401-02 감리비	849	0	34		
치수안전과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401-02 감리비	250	73	0	2022-12-19	사업계획 변경으로 LIMAC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수수료 납부(182,000천원)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401-01 시설비	1,066	0	73		

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0)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수방 대비 임시통수(’22. 6월~9월)에 따른 공사 중지 등으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 공사의 준공기한이 연기(’22. 7월→’22. 9월)되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리비 2개월분 3,400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시설비에서 융통한 것으로,
 - 당초 예산편성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임시통수가 앞당겨짐(’22.7.31.→5.31.)에 따라 준공기한이 2개월 연기됨에 따른 것임.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은 녹번천, 진흥로 역촌역~불광천 합류부 구간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되돌려 도심지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2. 10월 동 사업의 계획이 변경(복원구간 연장 750m→895m)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439억원→1,205억원)하였고, 이에 타당성 조사²¹⁾절차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감리비 7,300만원을 시설비로 융통한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21)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191)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7건 49억 47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573억 71백만원 대비 8.6%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 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14]와 같음.

[표 14]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1	치수 안전과	오류천(구로 구) 단면확장	3,341	1,302	0	39%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보완(3회)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2.8월 준공 및 '22년 12월 공사계약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사고이월
2	치수 안전과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1,716	1,111	23	65%	사업계획 변경 관련(복원연장 750m→895m) 사전절차 선행 후 설계용역 재개 예정으로 용역비 사고이월

-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은 오류천의 통수능 부족 및 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동역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해 오류천 단면을 확장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3억 41백만원 중 39%인 13억 2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안양천권역 기본계획’²²⁾에 따라 ‘15. 3월부터 ‘29. 4월까지 계획된 계속사업으로 금회 3단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20. 6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었으나,
- 서울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데 상당기간(총

22)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5호)

3차례, '21.6.9./'21.10.6./'22.4.25.)이 소요됨에 따라 '22. 8월에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준공되었고, 같은 해 11월 공사 및 감리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공사 및 감리 계약을 위한 선금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인행위 금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여기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지적사항([표 15] 참고)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접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견으로, 이는 최초 설계시부터 고려되었어야 할 요건들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간과한바,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설계시 필수적인 검토사항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할 것임.

[표 15]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1	·신설암거 연결구간에서 단면 완화구간 설치	·단면완화구간 설치	반영
2	·오수 차집관로 설치	·우수토실 설치 및 종정부 오수연결관 설치	반영
3	·기존암거 보강시 신설암거와 이격하여 안전확보	·이격설치 및 이격 공간내 완충콘크리트 타설	반영
4	·세굴위험도 분석 및 하상보호공법 수립	·유속 및 소류력에 안전한 호안공법 적용 및 기초근입깊이 확보	반영
5	·수격작용 발생여부 검토	·본 과정구간내 미발생	반영
6	·전체암거 신설 검토	·현지 교통여건 고려시 전체 철거후 신설 어려움	미반영
7	·단면 변화구간은 가하학적으로 점변하도록 설계	·단면완화 구간 설치	반영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불납결손액(C)	미수납액(A)-(B)-(C)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22	33,731	33,731	33,115	33,115	-	-	-	-	100.0
2021	33,889	33,967	31,940	31,940	-	-	-	-	100.0
2020	39,303	39,555	36,864	36,864	-	-	-	-	100.0

가) 개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37억 31백만원으로 331억 1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31억 15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결산서 p.27-28)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98.1%로 총 6억 16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표 16]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	차액(b)-(a)	사유
경상적 제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140	82	82	-58	보조금 수입 감소로 예금이자수입 감소
임시적 제외수입					
그 외 수입	0	381	381	381	세입계좌 회계 착오부과로 인한 수납 및 사업비 반납금 발생

보조금					
기금	30,178	29,454	29,454	-724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자금부족으로 부족수령(230백만원) 등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0	1,467	1,467	1,467	세입과목 변경으로 신규 징수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301억 78백만원 대비 징수 결정액은 7억 24백만원 감소한 294억 54백만원으로, 감소사유는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자금부족에 따라 국비 수령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2	33,731	-	-	-	-	33,704 (33,704)	33,731	30,060	727	-	727	1,966	978 (2.9%)
2021	33,889	78	-	80 (-80)	160 (-160)	-	33,967	29,951	-	-	-	1,468	2,548 (7.5%)
2020	39,303	252	-	39 (-39)	10 (-10)	-	39,555	32,746	78	-	78	1,189	5,541 (14%)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337억 31백만원으로, 이 중 89.1%인 300억 6천만 원은 지출하고, 2.2%인 7억 27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인 19억 66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9억 78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0~61)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잠실상수원관리(지방비) 등 3건으로 예비비는 당해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고, 잠실상수원관리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육 미시행에 따른 것임.

[표 17]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비율
1	치수안전과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37	0	337	100.0%
2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68	46	22	33.1%
3	치수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900	1,515	385	20.3%

-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은 ’21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현액 19억원 중 20.3%인 3억 8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주요 반납내역은 상수원관리사업 반납액 10억 8백만원, 퇴적물 준설사업 반납액 1억 49백만원, 한강본류쓰레기처리사업 반납액 2억 38백만원 등인데,
- 주요 불용사유는 ’20~’21년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된 보조금의 반납이 완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임.

[표 18] 국고보조금 반환(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이자포함)	비고
소계	20,728	19,214	1,515	
퇴적물준설	985	838	149	
함께서울 친환경텃밭 가꾸기	910	906	4	’20~’21년 사업
강동친환경 텃밭운영	280	279	1	’20~’21년 사업
하천수질개선 민간단체지원	236	223	13	
잠실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293	252	41	’20~’21년 사업

구분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이자포함)	비고
소계	20,728	19,214	1,515	
상수원관리지역관리	4,180	3,156	1,008	'20~'21년 사업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345	301	50	'19~'21년 사업
기금사업관리비	9	6	3	
한강분류쓰레기처리사업	1,595	1,360	238	
환경기초시설설치	11,895	11,893	8	'19년 사업

다) 예산전용(결산서 p.71)

- 해당 없음

라) 이체·변경사용

- 예산의 이체는 총 49건 337억 4백만원으로, 이 역시 '22.8.1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가 개정²³⁾되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하면서 기존에 수변감성도시과(기존 '물순환정책과')에서 담당하였던 수질오염총량관리 등의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정예산을 이체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19] 예산 이체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계	48건		33,704	33,704	33,704	
수변감성도시과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01 사무관리비	2	2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치수안전과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01	0	0	2	

23) [시행 2022. 8. 19.] [서울특별시규칙 제4501호, 2022. 8. 18., 일부개정]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사무관리비				예산이체
수변감성도시과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02 공공운영비	189	189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02 공공운영비	0	0	189	
수변감성도시과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	3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기본경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0	0	3	
수변감성도시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2 기타직보수	955	955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2 기타직보수	0	0	955	
수변감성도시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391	1,391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0	0	1,391	
수변감성도시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4-02 직급보조비	26	26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4-02 직급보조비	0	0	26	
수변감성도시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3-02 성과상여금	51	51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3-02 성과상여금	0	0	51	
수변감성도시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4-01 연금부담금	183	183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4-01 연금부담금	0	0	183	
수변감성도시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39	39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인력운영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04-02 국민건강보험금	0	0	39	
수변감성도시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64	1,064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인건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3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0	0	1,064	
수변감성도시과	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2 기타직보수	52	52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오염총량관리 전문인력 인건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01-02 기타직보수	0	0	52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401-01 시설비	1,600	1,60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401-01 시설비	0	0	1,690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401-02 감리비	110	11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401-02 감리비	0	0	110	
수변감성도시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201-01 사무관리비	340	34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201-01 사무관리비	0	0	340	
수변감성도시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206-01 재료비	220	22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206-01 재료비	0	0	220	
수변감성도시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6	86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0	0	86	
수변감성도시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206-01 재료비	54	54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206-01 재료비	0	0	54	
수변감성도시과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29	229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하천 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	0	229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	1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1-01 사무관리비	0	0	1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1-02 공공운영비	30	3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1-02 공공운영비	0	0	30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2-01 국내여비	5	5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202-01 국내여비	0	0	5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01-12 기타보상금	66	66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301-12 기타보상금	0	0	66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01-01	36	36	0	'22.8.19자 서울특별시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시설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401-01 시설비	0	0	36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0	16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	0	160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201-01 사무관리비	209	209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201-01 사무관리비	0	0	209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201-02 공공운영비	80	8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201-02 공공운영비	0	0	80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204-03 특정업무경비	8	8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204-03 특정업무경비	0	0	8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7	57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0	0	57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4	14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기금)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0	14	
수변감성도시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5	155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0	0	155	
수변감성도시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201-01 사무관리비	309	309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201-01 사무관리비	0	0	309	
수변감성도시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201-02 공공운영비	71	71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201-02 공공운영비	0	0	71	
수변감성도시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401-01 시설비	150	15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한강분류 쓰레기 처리사업 (한강수계기금)	401-01 시설비	0	0	150	
수변감성도시과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401-01 시설비	200	20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401-01 시설비	0	0	200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수변감성도시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01 사무관리비	5	5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1-01 사무관리비	0	0	5	
수변감성도시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2-01 국내여비	6	6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2-01 국내여비	0	0	6	
수변감성도시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10	1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0	0	10	
수변감성도시과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337	337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예비비(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01-01 일반예비비	0	0	337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1-01 사무관리비	60	6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1-01 사무관리비	0	0	60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2-01 국내여비	2	2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2-01 국내여비	0	0	2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	4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4	
수변감성도시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6-01 재료비	2	2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잠실상수원 관리(지방비)	206-01 재료비	0	0	2	
수변감성도시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100	3,10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	0	3,100	
수변감성도시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53	753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	0	753	
수변감성도시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701-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228	3,228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701-03 공기업특별회계	0	0	3,228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자본전출금				
수변감성도시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4,547	14,547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	0	14,547	
수변감성도시과	여유재원 예수·예탁금	704-01 예탁금	1,048	1,048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여유재원 예수·예탁금	704-01 예탁금	0	0	1,048	
수변감성도시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정수비용 지원)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65	465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정수비용 지원)	701-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	0	465	
수변감성도시과	국고보조금 반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1,900	1,900	0	'22.8.19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예산이체
치수안전과	국고보조금 반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0	0	1,900	

○ 예산의 변경 사용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

○ 차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2건, 7억 27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37억 31백만원 대비 2.2%에 해당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20]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현액	사고 이월액	집행 잔액	이월률	사 유
2건			2,000	727	4	36.4%	
1	치수안 전과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1,800	629	-	35%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기 이후 착공(10월)하여 준공기한 ('22.4.~'23.3.)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2	치수안 전과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200	98	4	49%	2회 유찰 등 용역 착수가 늦어져 준공기한('22.7.~ '23.4.)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잔액 사고이월

-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은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수원 취수구 하상에 퇴적된 오니토 등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억원 중 35%인 6억 29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퇴적물 준설을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계획하였으나, 집중호우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기 이후로 착공 시기를 연기('22.4월→'22.10월)함에 따라 준공 시기가 늦어져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23.3월 공사를 완료한 상황임.
-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은 잠실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도로의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원 중 49%인 9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2.3월 최초 용역 발주를 의뢰하였으나, 입찰이 2회

유찰²⁴⁾되어 '22.7월 수의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용역 착수가 늦어지고, 겨울철 강우일수 부족으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료확보가 어려워 용역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당초 '22.2월에서 '22.4월로 변경되면서 준공기한이 미도래('22.7.~'23.4.)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 역시 계속되는 유찰로 인해 용역발주 자체가 순연되면서 예산의 적기 사용을 못하게된 경우로, 유찰의 원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24) □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유찰 현황

구 분	1차	2차	3차
공 고 일	'22.3.17.	'22.4.18.	'22.5.16.
유찰사유	무응찰	무응찰	단독응찰

라.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수입								지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 상황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2	50,293	-	49,646	-	647	-	-	-	50,293	-	50,293	-	-	-	-
2021					해	당	없	음							
2020					해	당	없	음							

* 관련 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소방방재청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 국비분담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이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황	타 회계 및 기금(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황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2016년도말 의무적립액 : 188,688백만원)

가) 개 요

- 물순환안전국 소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임.

나) 기금 총괄(결산서 p.93)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96억 46백만원과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6억 47백만원을 합산한 502억 93백만원임.

[표 21]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	50,293	50,293	-	50,293

다) 기금 수입 결산(결산서 p.101)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수입계획액은 200억원이었으나, '21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그 중 296억 46백만원을 기금으로 추가 전입하여 수입계획현액은 496억 46백만원이 되었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6억 47백만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502억 93백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함.([표] 참조)

[표 22] 회전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20,000	49,646	-	49,646	50,293	50,293

라) 기금 지출 결산(결산서 p.102)

-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액은 200억원이었으나,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96억 46백만원이 추가 전입되어 지출계획현액이 496억 46백만원이 되었고, 해당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등 예치금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재예치하여 예치금 지출액 6억 47백만원이 증가하며 총 502억 93백 만원을 지출함.([표]참조)

[표 23]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예치금)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20,000	49,646	-	49,646	50,293	-

* 지출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내부거래 형식(예치금)으로 기금이 운용된 사항임

[붙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 서 명)
40	철저한 사업검 토를 통한 예산 의 불용발생 지 양	<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해당 사업은 예산의 전액이 불용되었고, 예산불용의 사유는 공사구간에 접한 노후 석축, 인근 노후 건물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임. 이는 사업설계와 예산편성시 고려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원활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함.</p> <p>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성동구청과 사업단계별로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사업추진시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p>	<p><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유수지 하부에 CSOs 저류조를 설치하는 공사로 인접지에 노후건물 및 노후석축이 위치하고 있어, 위험요인 사전 제거 후 공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공사중지하였음. ('24.10월 공사재개 예정) ○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추진 장애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물 순 환 안 전 국 (수변감성도시과)
41	정확한 사업계 획을 통한 예산 의 이월 발생지 양	<p>사업의 설계단계에서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사업 시행가능성을 높여야함. 예산의 이월사유는 사업설계시 예측한 공사 환경보다 많은 지장물과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하여 사업구간을 변경하며 추가 설계가 이루어짐. 이는 사업기간의 변경을 통한 예산의 이월을 발생시키고 공사준공을 늦추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함.</p>	<p><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설계용역 착수('21.8월)하여 준공('21.12월)예정이었으나 사업구간 확대(960m→1,600m)에 따라 과업기간 연장준공: '22.4월됨 ○ 공사시행 후 잦은강우('22.6.21-8.31 강우일 72일), 동절기 굴착통제('22.12~'23.2 3개월), 및 당초 지하매설물 도면과 상이한 지하매설물 등의 돌출로 인해 공사준공기한이 연장됨 ('22.12 → '23.6) ○ 향후 사업 시에는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물 순 환 안 전 국 (수변감성도시과)

연 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조 치 계 획	소 관 실 국 (부서명)
42	전반적인 사업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권고	<p>실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결과 현장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평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p> <p>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업평가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p>	<p><청계천 가로수 보호틀 설치></p> <p>○ 당초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 설치를 위해 공사비 40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결과 보행안전 및 야간조명으로써 실효성이 낮아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전액 불용함</p> <p>○ 향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및 관련 부서 등 사전협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음.</p>	물 순환 안전국 (치수안전과)
43	효과적인 사업 계획을 통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	<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지양해야함.</p>	<p><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p> <p>○ 추후 사업추진 시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된 예산이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음</p>	물 순환 안전국 (치수안전과)

40. 철저한 사업검토를 통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강우시 차집관로 용량을 초과하여 하천으로 월류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량·수질 계측을 통해 저감함으로서 오염부하 저감 및 하천 수질목표를 달성하여 공공수역 수질 개선을 위해 '18년부터 추진한 사업임.

해당 사업은 '21년 4월 설계오류 및 누락으로 공사중지 되었고 2,320백만원을 감액추경 하였음. '21년 이전에도 계속적인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2년 1월 사업시기 조정 검토보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이후로 공사재개가 늦어짐.

또한 공사구간에 접한 건축물에 대한 위험요소와 진행중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24년도 상반기 이후의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18	280	157	112	11	
2019	1,622	166	0	1,456	
2020	4,202	12	4,190	0	
2021	4,190	317	3,814	59	
2022	3,814			3,814	

□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25-98 (응봉유수지 내)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정계획, 2009.06)
- 기간 : '18.04. ~ '26.05. ('21.04. 공사중지, '24.10. 공사재개 예정)
- 내용 : CSOs 저류조 및 부대설비 설치공사
- 효과 :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그로 인한 수생태계와 주민 건강 등의 편의성 향상

나. 시정권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해당 사업은 예산의 전액이 불용되었고, 예산 불용의 사유는 공사구간에 접한 노후 석축, 인근 노후 건물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임. 이는 사업설계와 예산편성시 고려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원활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성동구청과 사업단계별로 충분한 상호협의를 통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사업추진시기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41.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의 이월 발생지양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기존의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IT를 접목하고 다양한 도시 물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형 물순환 체계로 개선하고 사업효과를 시민이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여 시민체감도를 향상을 목표로 '21년 6월 부터 시행된 사업임.

해당 사업은 '22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대상지 선정 후 당초 예상과는 다른 공사환경등에 의해 추가설계 및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2년 12월에 착공이 시작되며 예산이 이월됨.

스마트 물순환 도시조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22	2,825	1,328	1,458	39	

□ 사업내용

- 위 치 : 중랑구 망우로 보차도 구간(약 1.6km)
- 근 거 :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7조, 제34조
- 사업비 : 3,000백만원
- 기 간 : 2021.06. ~ 2023.06.
- 내 용 : 유출지하수와 중수도 등 다양한 도시 물자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효과 : 복합 기능의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통하여 대기온도 감소, 하수처리비용 절감, 디지털 전광판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

나. 시정권고

사업의 설계단계에서의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사업 시행가능성을 높여야함. 예산의 이월사유는 사업설계시 예측한 공사 환경보다 많은 지장물과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하여 사업구간을 변경하며 추가설계가 이루어짐. 이는 사업기간의 변경을 통한 예산의 이월을 발생시키고 공사준공을 늦추는 것으로 설계단계에서의 정확성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함.

42. 전반적인 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권고

[청계천 가로수 보호를 설치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청계천 안전통로 가로수에 태양광 보호틀을 설치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야간조명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2년 8월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험시공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중지하여 추경예산 400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함.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 설치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22	400	0	0	400	

□ 사업내용

- 위 치 : 청계천로 일대(모전교~황학교)
- 사업비 : 400백만원
- 기 간 : '22.08. ~ '22.12.
- 내 용 : 청계천 안전통로 가로수 보호틀 설치
- 효 과 : 가로수 생육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

나. 시정권고

실제 시험시공 및 모니터링 결과 현장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 전액을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사업평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사업평가와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43.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통한 예산의 불용발생 지양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 물순환안전국]

가. 현황 및 문제점

해당 사업은 중랑천 송정체육공원 일대 횡단 징검다리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임.

'21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653백만원 명시이월이 발생하였고, '22년에도 점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653백만원 사고이월이 발생함.

중랑천 횡단 징검다리 설치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2022	653	0	653	0	

□ 사업내용

- 위 치 : 송정체육공원 인근
- 사업비 : 700백만원
- 기 간 : 2021.01. ~ 2023.12.
- 내 용 : 둔치내 횡단 징검다리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
- 효 과 : 중랑천 횡단을 위한 보행동선 단축으로 체육시설 및 편의 시설 공유 등 하천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

나. 시정권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체 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지양해야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現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은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21년 5월부터 '22년 결산시점까지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업실행 단계에서 각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의미함.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을 막고 효율적인 사용을 권고함.